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02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박 정·김성원·김주영
이양수·이기현·허영
황명선·소병훈·이학영
김영환·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는 농민들의 권리 보장도 포함됨.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와 방식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입법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 제2항 제1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영농활동의 보장 및 지원) ① 국가는 접경지역 내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뢰 등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군사활동 등의 필요에 의하여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생 략)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의2.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u>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5조의2(영농활동의 보장 및 지원) ① 국가는 접경지역 내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국가는 지뢰 등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③ 국가는 군사활동 등의 필요에 의하여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u>